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14221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 2021.11.08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 2024.05.28.

[상전]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함께그린’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함께그린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권동로69번서길 16, 101호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TEL : 1855-0171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FAX : 031-890-0177

가맹사업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 : 영업부 / TEL : 1855-0171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상전』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 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식회사 함께그린	상전 외 7	경기도 오산시 궤동로69번서길 16, 101호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3.06.09	2023.06.21	정영민	1855-0171	031-890-0177
	법인등록번호	134811-0747686	사업자등록번호	835-86-0270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정영민	상전 외 7	경기도 오산시 궤동로69번서길 16, 10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영민	1855-0171	031-890-0177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이재명	상전 외 7	경기도 오산시 궤동로69번서길 16, 10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영민	1855-0171	031-890-0177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감사	임병태	상전 외 7	경기도 오산시 궤동로69번서길 16, 10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영민	1855-0171	031-890-017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함께그린	상전 외 7	2023.07.17	경기도 오산시 쿨동로 69번서길 16,101호	정영민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	-	-	-	-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상전]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상전	-
상 호	상전 00점	-
상 표		등록 제 4019779340000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1)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년	309,653	150,445	159,207	878,995	118,562	109,207
2022년	-	-	-	-	-	-
2021년	-	-	-	-	-	-

별첨1:2023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당사는 2023년 7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법인 전환 이전 개인사업자 매출액입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86,039	56,702	29,337	1,003,470	102,298	91,629
2021년	30,185	23,106	7,079	323,510	34,053	34,049

2020년	-	-	-	0	-	-
-------	---	---	---	---	---	---

별첨 1: 2020년~2022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정영민	대표이사	2023.06 ~ 현재	주식회사 함께그린 대표이사	사업총괄
			2021.05 ~ 2024.01	함께그린 대표	사업총괄
관련	이재명	사내이사	2023.06 ~ 현재	주식회사 함께그린 사내이사	영업기획
관련	임병태	감사	2023.06 ~ 현재	주식회사 함께그린 감사	사무회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0	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 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식회사 함께그린	가맹사업	2019.05~현재	[부라보맥주]라는 외식사업 정보공개서등록번호 20201036
가맹본부	주식회사 함께그린	가맹사업	가맹사업예정	[신촌부루스]라는 외식사업 정보공개서등록번호 20201712
가맹본부	주식회사 함께그린	가맹사업	가맹사업예정	[고기주택]이라는 외식사업 정보공개서등록번호 20201711
가맹본부	주식회사	가맹사업	가맹사업예정	[가마솔에 튀긴 광화문통닭]외식사업

	함께그린			정보공개서등록번호 20201710
가맹본부	주식회사 함께그린	가맹사업	가맹사업예정	[광화문커피]외식사업 정보공개서등록번호 20214228
가맹본부	주식회사 함께그린	가맹사업	2022. 11~현재	[발리다포차]외식사업 정보공개서등록번호 20214225
가맹본부	주식회사 함께그린	가맹사업	2023. 12~현재	[쏘시지요]외식사업 정보공개서등록번호 20221147
가맹본부	주식회사 함께그린	가맹사업	2021. 12~2023. 04 자진취소	[명동닭튀김]외식사업 정보공개서등록번호 20215548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여부 (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가맹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할 권리	2021.06.15 출원 2023.02.17 등록	출원 제 4020210123235 등록 제 4019779340000	정영민	2033.02.17 (2033.02.17)

- ▶ 당사는 상표 소유자로부터 상표권 전용 사용권을 취득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관한 서류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여 두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상기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귀하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책에 따라 상기의 지적재산권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상전]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가맹계약체결사실 없음

2. [상전]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부라보에프엔비	상전	정영민	가맹사업예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51, 201동 702호
함께그린	상전	상전	가맹사업예정	경기도 오산시 권동로69번서길 16, 101호
주식회사 함께그린	상전	상전	가맹사업예정	경기도 오산시 권동로69번서길 16, 101호

3. [상전]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상전	한식	전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전국 및 광역 지자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수
(단위: 개)

지역	2023년도 말			2022년도 말			2021년도 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상전] 가맹점 수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3	-	-	-	-	-	-
2022	-	-	-	-	-	-
2021	-	-	-	-	-	-

6. [상전]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상전]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년	2022년	2023년
가맹본부	주식회사 함께그린	부라보맥주	20201036	주점	43/1	45/0	38/0
가맹본부	주식회사 함께그린	신촌부루스	20201712	주점	0/0	0/0	0/0
가맹본부	주식회사 함께그린	고기주택	20201711	한식	0/0	0/0	0/0
가맹본부	주식회사 함께그린	가마솥에 튀긴 광화문통닭	20201710	치킨	0/0	0/0	0/0
가맹본부	주식회사 함께그린	광화문커피	20214228	커피	0/0	0/0	0/0
가맹본부	주식회사 함께그린	발리다포차	20214225	주점	0/0	7/0	28/0
가맹본부	주식회사 함께그린	쏘시지요	20221147	주점	0/0	0/0	1/1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사는 2023년도 말 기준 [상전]가맹점이 없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	해당 없음	-	-	-	-	-	-
서울	-	해당 없음	-	-	-	-	-	-
부산	-	해당 없음	-	-	-	-	-	-
대구	-	해당 없음	-	-	-	-	-	-
인천	-	해당 없음	-	-	-	-	-	-
광주	-	해당 없음	-	-	-	-	-	-
대전	-	해당 없음	-	-	-	-	-	-
울산	-	해당 없음	-	-	-	-	-	-
세종	-	해당 없음	-	-	-	-	-	-
경기	-	해당 없음	-	-	-	-	-	-
강원	-	해당 없음	-	-	-	-	-	-
충북	-	해당 없음	-	-	-	-	-	-
충남	-	해당 없음	-	-	-	-	-	-
전북	-	해당 없음	-	-	-	-	-	-
전남	-	해당 없음	-	-	-	-	-	-
경북	-	해당 없음	-	-	-	-	-	-
경남	-	해당 없음	-	-	-	-	-	-
제주	-	해당 없음	-	-	-	-	-	-

8. [상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상전]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없음	없음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당사가 직전 사업년도에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내역은 당사의 총 브랜드와 관련해 회사에서 지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당 브랜드의 가맹 사업을 위한 광고비 지출은 아래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수 단	기 간	지출 비용 (단위 : 천원 부가세미포함)			비 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비공개)	[106,701]	 (비공개)	-	-
광고	-	-	106,701	 (비공개)	-	-
판촉	-	-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전화번호	비고
기업은행	1566-2566	-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기업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기업은행을 방문하시어 가맹금을 예치하시거나 기업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기업=>증명서/기업지원=>가맹금인터넷예치서비스]에 접속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상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략 아래 표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역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 가입비	3,300	계약체결 후 익일 이내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인도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 됨
	2. 상표사용료				
	3. 매뉴얼/인력지원 대가				
교육비	개정 전 교육비	2,200		교육 실시 1일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 실시 이후 반환 안 됨
합계		5,500			

2)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2,000	계약 체결 후 익일 이내	계약종료 후 공급품 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위약금, 영업표지 등 원상회복의무 미이행시 정산 후 반환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함.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가맹비	3,300
개점 전 최초교육비	2,200
계약이행 보증금	2,000(VAT없음)
합계	7,500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49.5㎡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사유
간판	본사	5,500	-	-설치 3일 전: 100%	설치 전 계약취소	설치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본사	24,750	1,650	-계약시: 50 % -중도금: 30 % -완료시: 20 %	설치 전 계약취소	설치 전 계약취소
홀집기	본사	5,500	-	-설치 3일 전: 100%	설치 전 계약취소	설치 후
주방설비 및 기기	본사	11,000	-	-설치 3일 전: 100%	설치 전 계약취소	설치 후
총계		46,750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사업장의 운영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시공권을 부여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반드시 모델점을 방문하는 등 당사와 협의하여 [상전]의 컨셉트에 맞도록 시공하며, 본사의 자문을 받도록 합니다. 이 경우 본사의 실측도면과 인테리어 시공도면 등의 사용과 인력파견 등 감리에 따른 비용으로 3.3제곱미터 마다 일금 삼십삼만원(W330,000)정<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별도사항**

*초도물류, 포스/키오스크, 건물 개·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승압 및 분전함, 가스시설공사, 상하수도공사, 덕트(입상, 급기)공사, 소방 설비, 화장실, 냉난방기, 각종 인허가

※ **유의사항**

* 위 사항은 점포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벌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벌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벌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5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30%
계약 체결 후 5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50%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	가맹점 입지선정의 주체는 가맹희망자입니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점포면적에 따른 외견상의 조연과 해당지역의 부동산 업자를 알선할 수는 있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 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8세 이상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상전]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9) 당사는 가맹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분할 납부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며, 가맹계약에 명시된 대로의 이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사유	비고
총계		-				
로열티	가맹본부	220	익월10일	반환안됨	상표사용료 경영지원넷가	소멸성 비용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브랜드광고, 서비스/상품광고시 전체가맹점이 광고비50%를 부담	발생시 공지	반환안됨	광고비용 으로소요	산출근거 서면제시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	-	-	-	가맹점사업자 자율
점포환경 개선비용	-	-	-	-	-	가맹점사업자 자율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금의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반환안됨	-	-
정기교육	가맹본부	실비	교육3일전	반환안됨	교육비용소요	-
비정기교육	가맹본부	실비	교육3일전	반환안됨	교육비용소요	-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내역은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와 가맹점주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차액가맹금 지급

당사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단위:천원)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3)가맹점사업자의 회계처리 및 재고관리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 자료를 성실히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관리, 감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내 용	빈도/시기	담당팀	비고
운영관리	- 가맹점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가맹점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 - 운영방법 및 계획 파악을 위한 면담 및 자료요청 권리	수시	당사의 임직원	-
회계관리	- 회계장부(포스) 등 경영전반에 관련된 기록을 열람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수시	당사의 임직원	
판매량조사	- 가맹점의 판매량 조사를 통한 매장의 특성 이해	수시	당사의 임직원	
레시피관리	- S/V 또는 M/V를 통한 매장의 균일한 레시피 관리	수시	당사의 임직원	
시설관리	- BI적용 및 낙후 시설 개선 요구의 권리	수시	당사의 임직원	
위생관리	- 위생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매장과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	수시	당사의 임직원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가맹점주와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와의 쌍방간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며,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의 재계약의 연장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또한, 계약의 갱신시에는 새로운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후 조치사항

가맹계약서 제38조 [가맹본부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시 조치사항]

①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의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더 이상 그 독점적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귀하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③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원칙적으로 당사는 모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귀하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양도인)는 최초 가맹계약 시 가맹본부에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 계약의 종료일(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물품대금 포함)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상환하지만, 보증금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채무액을 당사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은 다음의 각 경우에 따라 부담이 발생합니다.

가. 잔여 계약기간으로 양수하는 경우

항목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없음	부가세포함
교육비	2,200	부가세포함
계약이행보증금	2,000	부가세없음

나. 신규 계약 기간으로 양수하는 경우

항목	금액(단위 천원)	비고
가맹비	3,300	부가세포함
교육비	2,200	부가세포함
계약이행보증금	2,000	부가세없음

4)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의 추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5)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면, 귀하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상전] 운영권을 상실하며, 당사와 귀하는 즉시 다음 각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호나 상표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중지하고 [상전]가맹점임을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거나 제거하여야 합니다.

나. 그 외에 점포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대여 받은 운영매뉴얼, 규정집, 홍보매뉴얼, 전산 및 매장관리솔루션, 문서, 도면, 도서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 영업비밀이나 고객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는 행위를 하거나 당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귀하가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당사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등 본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 귀하께서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직접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위 시설물 철거비용의 상환을 부담 할 수 있습니다.

마. 당사와 귀하는 본 계약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상전]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2023년도 가맹점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상전]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상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당사가 [상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 추가 상품을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소고기육전	왼쪽에 기재되지 상품 및 승인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1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회 서면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치즈감자전			
민물새우전			
고기김치전			
깻잎전			
모듬전			
호박전			
모듬전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추가적인 제한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다른 가맹점 사업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

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추후 서면통지)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

※ 권장가격 이외에 event 할인, 프로모션 할인, 쿠폰행사 등 가격할인 행사에 관한 사항은 영업 환경변화에 따라서 당사와 가맹점주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전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	상전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1 km (대학교, 역세권, 대형 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 기타 특수상권의 가맹점은 거리와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상전]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일반소매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상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일반소매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기간

[상전]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갱신시에는 계약이 **2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5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장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상품 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제36조 1항의 1호: 제25조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의 중단]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에 의한 개점후 교육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경업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규정 위반에 대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저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협의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3회 이상 상품·서비스의 대금지급을 연체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운영관리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규정에 의한 광고비 부담 및 판촉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 운영권 양도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협의 없이 가맹점 운영을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제36조 1항의 2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설비, 영업허가, 기타 영업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에 따른 금전 채무지급에 관하여 별도 약정한 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약정한 상품/서비스의 주문, 품질기준 준수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지체한 경우	제36조 1항의 3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품 및 서비스를 별도 구매하고 판매하였을 경우	제36조 1항의 4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원재료를 타인에게 제공·대여·판매한 경우	제36조 1항의 5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물품·원재료를 공급받지 않고 직접 구입·판매 한 경우	제36조 1항의 6호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가격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제36조 1항의 7호
가맹점사업자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6조 1항의 8호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상의 비밀, 메뉴레시피, 메뉴얼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복사하여 제공한 경우	제36조 1항의 9호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6조 1항의 10호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6조 2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6조 3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 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6조 4항 각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라.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가.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나.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법 등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본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해당 조문에 대해 특약사항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하에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라. 또한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서면요청이 있을 후 본사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가 유무를 통지하게 되며, 거절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승인을 한 경우 대상자는 승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당사가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양도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 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금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승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법적효력 발생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요청 → 승인여부통지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
대리행사	당사 승인 시 가능	-	-	-
업무위탁	당사 승인 시 가능	-	-	-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받되, 가맹비는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점 전 최초교육비는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대리인, 위탁인 또한 같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귀하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전을 판매하는 [상전]과 동일업종	해당 없음	문의 : 당사 (TEL 1855-0171)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상전”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협의	매월 26일 이상, 주6일 이상 점포를 개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 귀하께서 개인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시기	담당팀
메뉴, 조리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분기	사업본부
매장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서비스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프로그램취급여부, 청결 및 정돈 상태, 서비스 상태,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월 매출, 연 매출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광고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광고	브랜드광고	50%	50% (전체가맹점)	산출의 근거를 서면을 통해 제시	온오프라인
	서비스/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없음	해당 없음	

2) 가맹점사업자의 판촉 활동

가맹사업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판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당사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판촉 활동을 위한 판촉물 제작시 [상전]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판촉, 홍보 매뉴얼 그밖에 영업활동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 등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은 물론이고 종료 후에도 3년간 유지되며 위 내용을 위반하여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사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별로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해지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폐업처리하거나 [상전]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별로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영업비밀유지 의무, 계약 존속 중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 금삼십만원(₩300,000원)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5.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45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43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0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7	-
가맹금 예치	- 가맹본부에 가맹금 예치	D-26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5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3~5	-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5~1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을 일체 요구하지 않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상전]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상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훈련종류		주요내용	교육생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정전 교육		메뉴교육 조리교육 홍보마케팅 가맹점운영의 전반적 교육	가맹점사업자 / 관리자	이론/실습 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개정하기 전까지 이수하여야 함	필수교육
개정 이후 교육	정기교육	서비스 제고 매출증대 방법	가맹점사업자 / 관리자	이론/ 실습교육 (정기)	교육실시 30일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비정기교육	영업방침 /신메뉴교육	가맹점사업자 / 관리자	이론, 실습교육 (비정기)	교육실시 14일전에 교육시간 및 장소 등을 통지	

2. 교육,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상전]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부가세포함)	비고
개정전 교육		5일 총30시간	2,200	-
개정 이후 교육	정기교육	1일	실비	-
	비정기교육	1일	실비	

3.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계약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해당사항 없습니다.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 년, 개월)

2023년도말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	-

-끝-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주)함께그린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맹금 예치 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제 1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의 7 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확인서

가맹본부		브랜드명	
------	--	------	--

■ 가맹계약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공확인	본인은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습니다.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제공확인	본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정보를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 _____

No.	상호(가맹점명)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현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가맹희망자는 수령일로부터 1개월 후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수령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에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맹본부	대표이사:	(인)
가맹희망자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